P - 116 - 2012

경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

2012. 8.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- O 작성자: 매경안전환경연구원 강 미진
- O 제 · 개정 경과
 - 2012년 7월 화학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제정)
- O 관련 규격 및 자료
 - Chemical Information Sheet 6, "Better alarm handling", HSE, 2000
 - HSG 48, "Reducing error and influencing behavior", 1999
 - M L Bransby & J Jenkinson, "The management of alarm systems, CRR 166", HSE, 1998
 - IEC 61511 Functional Safety Safety Instrumented Systems for the process industry sector, First Edition, 2003
 - IEC 61508 Functional Safety of electrical/electric/programmable electronic safety-related systems, Edition 2.0, 2010
 - KOSHA Code, 방호계층분석기법에 관한 지침, 2012
 - KOSHA Guide, 안전무결성등급(SIL)의 산정에 관한 지침, 2012

O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
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 페이지 안전보 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: 2012년 8월 27일

제 정 자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P - 116 - 2012

경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

1. 목적

이 지침은 최근 화학공장 등에서 이상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이탈현상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설치된 경보시스템이 적절하게 관리되지 못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제시하고, 경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화학공장에서의 사고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화학공장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장에서 공정의 이상상태를 감지하기 위해 경보시스템을 설치, 운영하는 모든 경우에 적용한다.

3.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
 - (가) "계장시스템 (Instrumented control system)"이라 함은 공정변수 및 상태를 감지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전기(Electrical), 전자(Electronic) 혹은 프로그래 및 전자시스템(Programmable electronic system) 등을 말한다.
 - (나) "안전계장시스템"이라 함은 하나 이상의 안전계장기능(Safety instrumented function)을 이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계장시스템을 말하며, 일반적으로 감지부 (Sensor), 로직해결기(Logic solver), 최종요소(Final element)로 구성된다.
 - (다) "로깅 (Logging)"이라 함은 필요한 결과, 예를 들어 공정변수 등과 같은 값을 일정한 간격으로 일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.
 - (라) "휴먼인터페이스 (Human interface)"라 함은 계장시스템과 운전자를 연결시켜 주는 것을 말하며, 흔히 모니터나 계기판 등의 시각적 접촉과 음성출력과 같은 청각적 접촉 및 근로자의 조작이 이루어질 수 있는 키보드, 마우스 및 터치화면 등을 포함한다.
 - (마) "플랜트인터페이스 (Plant interface)"라 함은 센서를 통한 입력, 액츄에이터 (Actuator)를 통한 출력, 전선 등을 통한 통신 등을 말한다.

P - 116 - 2012

- (바) "안전무결성등급 (Safety Integrity Level, SIL)"이라 함은 전기·전자·프로그램 가능형 전자장치로 구성된 안전관련 시스템이 정해진 시간에 모든 조건에서 특정안전기능을 만족스럽게 수행하는 확률의 범위를 4개의 불연속적인 수준으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.
- (사) "작동요구 시 고장확률 (Probability of failure on demand, PFD)"이란 시스템 이 특정한 기능을 작동하도록 요구받았을 때 실패할 확률을 말한다.
- (2)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「산업안전보건법」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 및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4. 경보시스템의 중요성

4.1 계장시스템(Instrumented control system)

4.1.1 일반 사항

- (1) 계기를 통한 제어시스템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.
 - ① 공정변수 및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, 기록(Recording), 로깅(Logging)
 - ② 공정변수 및 상태에 대한 정보 제공
 - ③ 공정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제어(Control)
 - ④ 시운전, 정상운전, 비상정지 및 정상운전범위 내에서의 교란(Disturbance)
 - ⑤ 위험요인 징후의 감지, 위험요인의 자동 종결 혹은 완화
 - ⑥ 위험요인을 초래할 수 있는 자동 혹은 수동 작동의 방지
- (2) 계장시스템의 기능은 경보와 공정제어시스템 및 보호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, 보호시스템이란 트립(Trip), 인터록(Interlock) 및 비상정지 등을 포함한다.
- (3) 계장시스템은 휴먼인터페이스, 플랜트인터페이스, 논리구조, 부대설비 및 환경적 요인과 같은 요소를 공유하기도 하며, 독립적으로 운영되기도 한다.

4.1.2 안전계장시스템

(1) 계장시스템이나 장치가 다음의 특징을 가질 때 안전관련 기능을 갖춘 안전계장시

P - 116 - 2012

스템으로 인정된다.

- ① 공정이 제어를 벗어났을 때 동작
- ② 미리 정해진 안전상태로 이행
- ③ 통제나 제어가 가능한 상태로 유지
- (2) 만일 안전계장시스템(Safety instrumented system)이 일반공정제어시스템(Basic process control system)과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독립방 호계층으로 인정할 수 있다.
- (3) 안전계장시스템의 기능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역할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.
 - ① 위험요인의 초기사건 발생(Initiation) 방지
 - ② 위험요인 징후의 감지
 - ③ 위험한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의 수행
 - ④ 위험요인으로 인한 결과의 완화
- (4) 안전계장시스템은 그 기능의 요구빈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3가지로 구분된다.
 - ① 안전기능의 작동이 요구되는 빈도가 1년에 1회 미만인 경우, 저요구형(Low demand mode)이라고 한다.
 - ② 안전기능의 작동이 요구되는 빈도가 1년에 1회 이상인 경우를 고요구형(High demand mode)이라고 한다.
 - ③ 안전기능의 작동이 실패하면 즉시 불안전한 상태를 초래하거나 다른 방호장치를 작동시켜야 하는 경우를 연속형(Continuous mode)이라고 한다.
- (5) 저요구형(Low demand mode)일 경우 안전계장시스템이 보장하여야 하는 평균 작동요구 시 고장확률에 따라 안전무결성등급(Safety integrity level, SIL)은 <표 1>과 같이 4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.

<표 1> SIL 분류

SIL	평균 작동요구 시 고장확률 (PFDavg)	리스크(Risk) 감소지수 (Risk reduction factor)
SIL 4	< 10 ⁻⁴	$> 10^4$
SIL 3	$\geq 10^{-4} \text{ to } < 10^{-3}$	$10^3 \sim 10^4$
SIL 2	$\geq 10^{-3} \text{ to } < 10^{-2}$	$10^2 \sim 10^3$
SIL 1	$\geq 10^{-2} \text{ to } < 10^{-1}$	10 ~ 10 ²

- (6) SIL의 구분 및 산정에 대한 일반사항은 KOSHA Guide 안전무결정등급(SIL)의 산정에 관한 지침을 참조하며, 위험성평가를 기반으로 공정에서 요구하는 SIL의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KOSHA Code 방호계층분석기법에 관한 기술지침을 참조한다.
- (7) 안전계장시스템은 SIL 단계별로 그 기능과 역할을 유지할 수 있는 유지관리 수준 이 달라지며, 특히 평균 작동요구시고장확률(PFDavg)는 다음에 따라 달라진다.
 - ① 진단범위 (Diagnostic Coverage)
 - ② 검증시험주기 (Proof Test Interval)
 - ③ 검증시험범위 (Proof Test Coverage)
 - ④ 공통원인지수 (Common Cause Factor)
 - ⑤ 하드웨어고장허용치 (Hardware Fault Tolerance)

4.2 안전에 관련된 경보시스템의 역할

- (1) 경보시스템은 운전자로 하여금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안전계장시스템의 동작빈도를 감소시키고 공정 전반의 안전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.
- (2) 안전계장시스템에 포함되는 경보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관리되어야 한다.
 - ① 해당 경보가 작동하였을 때의 대응절차를 문서로 명확하게 작성하고, 운전자를 훈련시켜야 한다.
 - ② 해당 경보는 다른 경보와 구별이 가능하고, 우선순위를 가져야 하며, 경보가 작동되는 동안 계속 운전자가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.

P - 116 - 2012

4.3 부적절한 경보시스템의 위험요인

- (1) 공정의 비정상상태를 알리는 경보가 너무 많은 경우, 가장 중요한 조치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 수 없다.
- (2) 경보의 소리가 주변의 소음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경보의 색상이나 명도가 주변의 조명과 비슷한 수준인 경우, 근로자가 경보를 인지하기 어렵다.
- (3) 근로자가 상주하는 곳이 아닌 장소에서 경보가 발생하면, 필요한 후속조치가 적절한 시기에 시행될 수 없다.
- (4) 경보가 발생한 후 근로자의 후속조치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공 정을 정상상태로 회복할 수 없다.

5. 경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방안

5.1 문제점 도출

- (1)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현재 경보시스템의 현황을 파악한다.
 - ① 얼마나 많은 경보가 설치되어 있는가?
 - ② 모든 경보가 반드시 필요하며, 근로자의 후속조치가 필요한 것인가?
 - ③ 정상 운전 중 경보 발생비율은 얼마인가?
 - ④ 비정상상태에서 경보의 발생비율은 얼마인가?
 - ⑤ 경보 지속시간은 어느 정도인가?
- (2)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현재 경보시스템으로 인한 문제점을 파악한다.
 - ① 과다한 경보로 인해 혼란을 초래한 적이 있는가?
 - ② 연속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사소한 경보가 발생한 적이 있는가?
 - ③ 규칙적으로 경보 소리를 끄는 경우가 있었는가?
 - ④ 경보의 우선순위가 있었다면 도움이 되었는가?
 - ⑤ 근로자가 각각의 경보에 대한 후속조치를 잘 알고 있는가?
 - ⑥ 경보가 울렸을 때 제어실 화면을 통해 얼마나 쉽게 해당 설비를 찾아낼 수 있는가?

5.2 경보시스템의 설계

5.2.1 적정한 경보 발생비율

- (1) 정상 운전 중 근로자가 충분히 인지하고 조치할 수 있는 경보의 발생비율은 10분 동안 1개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.
- (2) 비상상황인 경우, 근로자가 충분히 인지하고 조치할 수 있는 경보의 발생비율은 정상조건을 벗어난 처음 10분 동안 10개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.

5.2.2 경보의 선정 및 우선순위 부여

- (1) 비상상황에서 오랫동안 울리는 경보나 오작동으로 인한 경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한다.
- (2) 근로자가 상주하는 지역이 아닌 곳에 경보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, 근로자가 상주하는 인근 지역에 해당 경보를 반복할 수 있는 장치(Repeater)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- (3) 반드시 필요한 경보를 선정하였다면 근로자가 후속조치를 하지 못할 경우 예측되는 사고피해결과를 토대로 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.
- (4) 경보의 우선순위는 대략 3단계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, 가장 중요한 경보는 전체 경보 중 약 5%, 중간 단계의 경보는 약 15%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
5.2.3 경보의 소리와 밝기

- (1) 경보는 주변의 일상적인 소음보다 약 10 dB 정도 높은 소리를 갖도록 하고, 경보 가 울린 후 근로자가 소리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- (2) 경보의 밝기는 예상되는 모든 외부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하되, 주변과 쉽게 구별할 수 있는 색상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- (3) 경보의 우선순위가 다르다면 소리, 음파, 색상, 깜박임 등을 적용하여 서로 구별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.

5.2.4 경보 설정값의 결정

(1) 경보가 발생한 후 근로자가 충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경보 설정값을 확인하

P - 116 - 2012

여야 한다.

(2) 필요한 경우 2단계로 경보를 구분할 수 있다. 예를 들어 High alarm 후 High-high alarm을 설정한다.

5.2.5 경보시스템의 지속적인 관리

- (1) 경보의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모든 시스템에 대해 동일 하게 적용하여야 한다.
- (2) 새로운 경보를 설정하여야 하거나, 기존의 경보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정해 진 절차와 기준에 따라 경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.
- (3) 운전이 정지된 설비나 공정은 경보시스템의 작동을 중지하여 불필요한 경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.

5.3 교육 훈련

- (1) 경보가 발생하였을 때 문제점을 쉽게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로자를 교육시킨다.
- (2) 경보가 발생하였을 때의 역할과 책임을 정상상황과 비상상황 각각에 대해 명확히 구분한다.
- (3) 경보를 바이패스(Bypass)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승인 받은 후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.

P - 116 - 2012

<부록 1> 사고사례

- 1. 1989년 Phillips 66 사고사례 (미국 Passadena)
 - (1) 사고피해: 증기운 폭발 및 화재로 23명 사망, 약 300명 부상
 - (2) 사고개요: 폴리에틸렌 공장에서 반응기에 대한 예방정비 과정 중 인화성 물질이 누출되어 증기운 폭발을 일으켰고, 이로 인해 연쇄적으로 화재·폭발이 발생한 사고 임.
 - (3) 경보에 관련된 문제점

경보의 소리가 너무 작아 공장 내 모든 사람이 경보가 울렸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 하였음.

- 2. 1994년 Texaco 정유공장 사고사례 (영국 Milford Haven)
 - (1) 사고피해: 26명 부상, 약 4천8백만 파운드의 손실
 - (2) 사고개요: 심각한 뇌우로 증류(Distillation) 및 알킬레이션(Alkylation) 공정 등에서 교란(Disturbance)이 발생하였고, 공정의 이상현상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약 20톤의 인화성 물질이 플레어 넉아웃 드럼(Flare knock-out drum) 배출배관에서 누출되었다. 누출된 물질은 증기운을 형성하였으며, 드럼에서 약 110 m 떨어진 지점에서 점화되어 폭발한 사고임.
 - (3) 경보에 관련된 문제점
 - (가) 폭발이 발생하기 11분 전에 2명의 근로자가 인지하여 조치한 경보의 수량은 총 275개였음.
 - (나) 너무 많은 경보가 짧은 시간 동안 발생하였으며, 어떤 경보가 보다 중요한 지 알 수 없었으며, 무엇 때문에 경보가 발생하였는가에 대한 충분한 내용이 제어실에 표시되지 않았음.
 - (다) 근로자는 비상상태에 대처할 수 있는 훈련을 충분히 받지 못하였음.

P - 116 - 2012

- 3. 2003년 경기도 규산소다 제조공정 사고사례
 - (1) 사고피해: 3명 사망, 5명 부상, 공장 설비 붕괴
 - (2) 사고개요: 수산화나트륨, 물 및 규사를 용해조에 주입하고 규사를 용해하는 과정에서 용해로가 일정 압력에 도달하면 열 공급을 중단하여야 하나 열원 공급을 중단하여 못하여 용기 내에 높은 압력이 형성되고 이로 인해 용해조가 파열된 사고임.
 - (3) 경보에 관련된 문제점
 - (가) 내부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였으나 과압 방출장치인 안전밸브가 작동하지 않음
 - (나) 압력 상승 경보가 울렸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공정운전자 등이 충분히 교육 받지 못하여, 대처가 미흡하였을 것으로 추정됨
- 4. 2005년 BP 정유공장 사고사례 (미국 Texas)
 - (1) 사고피해: 증기운 폭발 및 화재로 15명 사망, 180명 부상
 - (2) 사고개요: 정기보수를 마치고 이성화공정(Isomer unit)을 가동하기 위하여 시운전을 실시하는 중 탑에 설치된 계기의 오작동 등으로 인하여, 유입된 인화성 액체가 탑상부까지 상승하여 압력방출밸브를 통해 블로우다운(Blowdown) 용기로 이송되었다. 용량을 초과하는 다량의 뜨거운 인화성 액체가 유입되면서 통기관(Vent)을 통해 대기로 방출되면서 증기운폭발이 발생한 사고임.
 - (3) 경보에 관련된 문제점
 - (가) 공정을 시작하기 전에 모든 경보를 작동하는 점검이 촉박한 시간 때문에 중단됨.
 - (나) 분리탑(Splitter) 액위에 대한 경보(High level alarm)이 작동하지 않아, 제어실 근로자가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었음.

P - 116 - 2012

- 5. 2010년 BP Deepwater Horizon Platform 사고사례 (미국 멕시코만)
 - (1) 사고피해: 11명 사망, 17명 부상 및 해양오염
 - (2) 사고개요: 유정(Well)으로부터 시추라이저(Drilling riser)로 이송 중이던 고압의 메 탄가스가 착암기(Drilling rig)로 누출된 후 점화되어 폭발한 사고임.
 - (3) 경보에 관련된 문제점
 - (가) 비상상황이 아니거나 중요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경보를 설정하여, 근로자 가 너무 많은 경보에 노출됨.
 - (나) 중요하지 않은 경보가 너무 많아 취침시간에는 경보소리를 끈 상태로 유지하여, 사고 당일 비상상황에서 경보음이 울리지 않아, 스피커(Loudspeaker system)를 이 용하여 상황을 서로에게 알려줌.
 - (다) 폭발성 증기운에 대한 경보는 몇 달 전부터 꺼진 상태였음.